
Policy and Law Report _Vol.13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4.11.~ 2022.04.17) -

April 1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p>• 2022년도 IT 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p> <p>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IT 리스크 계량평가 제도」 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 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 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p> <p>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 업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IT 리스크에 대한 상시평가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IT 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평가방법) 계량평가 지표는 5개 부문*, 36개 항목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 4~10개 항목(반복지적, 장애 등)을 추가 * IT감사, IT경영,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제공·지원, IT보안·정보보호 <p>② 자체감사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IT 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 (운영방안) IT 리스크 상시평가 등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취약점을 자율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 * 금융회사 등의 자체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IT상시협의체를 통하여 각종 노하우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p>③ IT 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IT 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2~5년 주기로 IT부문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 금융업권의 IT부문 정기검사 운영방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주기</th>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주기</th> </tr> </thead> <tbody> <tr> <td>은행</td> <td>(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 지방은행 등) 3.5~4.5년</td> <td>보험</td> <td>(대형 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td> </tr> <tr> <td>금융투자</td> <td>(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td> <td>여신전문</td> <td>(카드사, 대형 캐피탈) 5년</td> </tr> <tr> <td>저축은행</td> <td>(대형 저축은행) 2년</td> <td>상호금융</td> <td>(신협 중앙회) 3년</td> </tr> </tbody> </table>	구분	주기	구분	주기	은행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 지방은행 등) 3.5~4.5년	보험	(대형 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여신전문	(카드사, 대형 캐피탈) 5년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 2년	상호금융	(신협 중앙회) 3년	2022-04-11
구분	주기	구분	주기															
은행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 지방은행 등) 3.5~4.5년	보험	(대형 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여신전문	(카드사, 대형 캐피탈) 5년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 2년	상호금융	(신협 중앙회) 3년															

부처	내용	일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p>• 전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착수</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게 됨</p> <p>‘마이데이터 표준화’는 모든 참가기관이 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하여 분야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으로,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야 표준 현황 및 표준화 예시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분야별 표준 현황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입금자명 (성/이름 구성)</th> <th>결제금액 (정수값)</th> </tr> </thead> <tbody> <tr> <td>금융</td> <td>예금주명, 고객명 (holder_name)</td> <td>거래금액 (trans_amt)</td> </tr> <tr> <td>의료</td> <td>이름 (Name)</td> <td>청구금액 (Requested amount of reimbursement)</td> </tr> <tr> <td>공공</td> <td>한글성명, 고객명 (CUST_NM)</td> <td>결제금액 (DLNG_AMT)</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표준화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입금자명 (성/이름 구성)</th> <th>결제금액 (정수값)</th> </tr> </thead> <tbody> <tr> <td>공통 표준 (안)</td> <td>한글성명 (Name)</td> <td>거래금액 (trans_amt)</td> </tr> </tbody> </table> </div> </div> <p>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주관하는 기관(컨트롤타워)으로서, 범부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표준화 이행안 마련을 위한 ‘표준화 전략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을 통해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p> <p>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 및 표준용어사전(Data Dictionary) 개발 ②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세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및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 마련 등이 있음 	구분	입금자명 (성/이름 구성)	결제금액 (정수값)	금융	예금주명, 고객명 (holder_name)	거래금액 (trans_amt)	의료	이름 (Name)	청구금액 (Requested amount of reimbursement)	공공	한글성명, 고객명 (CUST_NM)	결제금액 (DLNG_AMT)	구분	입금자명 (성/이름 구성)	결제금액 (정수값)	공통 표준 (안)	한글성명 (Name)	거래금액 (trans_amt)	2022-04-12
구분	입금자명 (성/이름 구성)	결제금액 (정수값)																		
금융	예금주명, 고객명 (holder_name)	거래금액 (trans_amt)																		
의료	이름 (Name)	청구금액 (Requested amount of reimbursement)																		
공공	한글성명, 고객명 (CUST_NM)	결제금액 (DLNG_AMT)																		
구분	입금자명 (성/이름 구성)	결제금액 (정수값)																		
공통 표준 (안)	한글성명 (Name)	거래금액 (trans_amt)																		

부처	내용	일시
조달청	<p>• 제5차 조달혁신위원회 개최</p> <p>조달청은 13일 조달행정과 조직문화 혁신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조달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조달 혁신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p> <p>주요 성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혁신제품 지정·구매 등 혁신조달의 전략적 확산 ②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디지털서비스 확대 등 조달의 디지털화 ③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자가검사키트 신속 공급 등 국민안전 우선 조달 ④ 공정·소통·수평의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 등이 있음 	2022-04-1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4.12.시행)</p> <p>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분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정하는 한편,</p> <p>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냉매회수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4-12
고용노동부	<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4.14.시행)</p> <p>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용자로 하여금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운영자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p> <p>이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상·지원수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마다 두어야 하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업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관련 경험·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 	2022-04-1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p>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제16조의4, 제16조의5 및 제16조의10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국채 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등 13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경우만 가능)가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p>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등 (제16조의15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수준은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p>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적립금 운용방법 확대 (제25조제1항라목 및 같은 항 제3호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범위에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취득하는 예탁금’과 ‘유동화증권 중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추가함 <p>⑥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부과하던 과태료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p>	
국토 교통부	<p>•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4.12.시행)</p> <p>「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서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던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독립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국토연구원을 제외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한편,</p> <p>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반드시 '전용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공용 사무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p>	2022-04-1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기획재정부</p>	<p>•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p> <p>※ 의견 제시기간 : 4/11(월)~4/1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p>	<p>2022-04-11</p>
<p>환경부</p>	<p>•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p> <p>올바로시스템 운영·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내용의 구체화</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②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③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④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p> <p>※ 의견 제시기간 : 4/11(월)~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p>	<p>2022-04-05</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식품 의약품 안전처</p>	<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시기 개선 및 변경명령 근거 마련 등 (안 제4조 및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자료 평가 결과 일정 기한까지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변경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p>②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출자료 간소화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 준수사항 근거 마련 등 (안 제2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의 신청서류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정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에게는 치료목적 사용내역·안전성 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치료목적 사용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p>③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절차·서식 마련 등 (안 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매년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p>④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대상 의약품 규정 (안 제62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p>⑤ 원료혈장 수입 체계 정비 등 (안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장분획체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입 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와 원료 공급 계약에 맺고 원료혈장을 제공하는 대한적십자가 분기별로 사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p>⑥ 거짓·부정한 국가출하승인 시 처분기준 마련 등 (안 별표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자 및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후 시판 1개월 전까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규정하고자 함 <p>※ 의견 제시기간 : 4/14(목)~6/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p>	<p>2022-04-14</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의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 (안 제37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p>②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 (안 제37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p>③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 (안 제37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p>④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37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 <p>※ 의견 제시기간 : 4/12(화)~5/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로 제출</p>	2022-04-1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p>•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제1항)</p>	2022-04-08
	<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p> <p>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p> <p>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제20조제3항 후단 신설, 제20조제7항 단서조항 삭제 등)</p>	2022-04-11
기획재정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p> <p>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약 689만개로 1년 전인 2018년보다 3.8% 증가하였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p> <p>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임금 뿐 아니라 사내 복지 지출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복지 지출이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어 대기업과의 복지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p>	2022-04-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5 신설)</p>	
	<p>•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1인)」</p> <p>현행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p> <p>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p> <p>이에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6항 신설)</p>	2022-04-11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함. 반면, 국내 기업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뿐, 사업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음</p> <p>그런데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과의 과도한 세제혜택 차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p> <p>이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3) 신설)</p>	2022-04-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p> <p>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등 OTT(Over the Top)를 통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이 2019년 8월 기준 55만 테라바이트에서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2년간 약 45% 증가하였으며, 동영상에 의한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1%를 넘어서고 있음</p> <p>그러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또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p> <p>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p> <p>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등)</p>	<p>2022-04-14</p>
<p>문화 체육관광 위원회</p>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p> <p>게임산업 관련 현행 지원제도 및 진흥계획은 주로 게임개발, 유통과 배급,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p> <p>그런데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게임 플랫폼 해킹의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은 미비한 실정임</p> <p>이에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p>	<p>2022-04-12</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p> <p>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에 대해 제한하며, 이는 동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음</p> <p>그러나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 문화와도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추므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p>	2022-04-13
환경노동위원회	<p>•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래의원 등 10인)」</p> <p>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p> <p>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p> <p>이에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5제6항 후단 및 제13조의6 신설 등)</p>	2022-04-12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의 한도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p> <p>그런데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배분의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의견의 대립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p>	2022-04-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것임 (안 제24조제6항 신설)</p>	
<p>국토교통 위원회</p>	<p>•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8인)」</p> <p>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p> <p>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p> <p>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드론안전 확보를 위해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드론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②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③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및 제12조) ④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⑤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 ⑥ 「항공안전법」내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⑦ 「항공사업법」내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합병·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p>2022-04-13</p>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4/22(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5호 발간	
국회도서관	4/1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 미국혁신경쟁법(USICA)	
	4/19(화)	「현안입법 알리기」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4/21(목)	「최신정책정보:국내」 -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등	
	4/21(목)	「최신정책정보:국외」 - 주요 외국 싱크탱크기관이 발간한 최신 정책보고서의 요약문과 외국의 주요 정책자료 중 최근 2년 이내의 번역리스트 수록	
	4/21(목)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AI를 통해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도서관 1회의실
예산정책처	4/18(월)	「NABO Focus」 제43호 발간 - 주요국의 탄소가격제도 동향 및 시사점	
	4/22(금)	「NABO 재정동향&이슈」 제19호 발간 - 주요 재정지표·재정동향 및 외국의 재정동향 소개	
입법조사처	4/22(금) 10:00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속간담회(2차) 개최 - 주거빈곤 완화 및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과제	입법조사처 2세미나실

【별첨1】 제395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4/18(월) 미정	전체회의	현안 질의
기재위	4/19(화) 10:00	전체회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
과방위	4/20(수) 15:00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8(월) 14:00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권은희, 오기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18(월) 14:00	대전·충청·세종 지역은행 성공을 위한 전략 과제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9(화) 10:00	지역·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	송석준, 조오섭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4/19(화) 10:00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강화 정책보고서 발간 토론회	조정훈, 김성주, 조해진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9(화) 14:00	진짜 경제전문가 김경만의 중소기업UP! - LPG판매업계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20(수) 10:00	제1차 K-생명바이오 포럼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20(수) 10:00	(전문가에게 듣는다) 대한민국 대전망 -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20(수) 10:00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1(목) 15:00	2022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 한국 철강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략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의원실 외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3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15(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4호 발간	
	4/15(금)	「헌법과 법제」 제17호 발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4/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0호 발간 -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4/14(목)	「현안, 외국에선?」 제33호 발간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4/11(월)	「이슈와 논점」 제1935호 발간 -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1(월) 15:00	(새 정부 출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김웅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12(화) 10:00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세의 해결방안은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	의원회관 1세미나실
4/14(목) 10:00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 쌍둥이 세상 디지털 트윈이 온다	황보승희, 윤두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파트너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소속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